

ESG Issue Report

20210621

최수연 선임연구원

suyoun.choi@daishin.com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 ESG 리스크의 의미와 측정

Executive Summary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
 - 포스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약 744 억 원)은 2020 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포스코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외형적인 시스템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할 필요
 -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주의’ 제재가 큰 폭으로 증가: 2016 년 5 건 → 2020 년 94 건
 - 상대적으로 징계수위가 낮은 ‘기관주의’ 제재가 강화됨으로써 금융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현상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는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표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는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상이한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모든 제재가 동일한 ESG 리스크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위반 행위로 인한 ESG 리스크는 제재 부과 기관에서 공개한 제재 수위를 통해 측정이 가능
- 향후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공개될 경우, 제재와 관련된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량화에 용이
 -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으므로 제재 조치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데 용이
 - 금융위원회의 제재공시 자료는 판단 근거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존재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제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와 관련된 ESG 리스크의 의미와 정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0 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 중 포스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744 억 원을 재산정 및 부과한 사건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다. 포스코는 2002 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후 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대한 외부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하였으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진행된 시점과 외부평가로부터 높은 등급을 획득한 시점이 일치하는 점은 포스코 내부준법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포스코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외형적인 시스템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등록취소, 영업 전부 정지, 영업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중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가 큰 폭으로(2016 년 5 건 → 2020 년 94 건)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징계수위가 낮은 ‘기관주의’ 제재가 강화된 것은 금융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현상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는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는 개별 기업의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모든 제재가 동일한 ESG 리스크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위반 행위로 발생한 ESG 리스크는 제재 부과 기관에서 공개한 제재 수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으므로 제재 조치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였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와 비교하였을 때 판단 근거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공개될 경우, 제재와 관련된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량화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I.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 심의절차
2.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형별 현황
 - (1)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법 위반 유형
 - (2)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유형
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현황
 -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산정기준
 - (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요약 통계량
 - (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사례
 - 1) 6 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스코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 2) 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 3) 현대제철 등 11 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II.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제도

1.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처리절차
2.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 유형
3.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 유형 현황
4.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 (1)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과징금 부과기준
 - (2)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과태료 부과기준
5.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사례

III. 결론 및 시사점

1.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의 의미
2.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를 통해 해당 사건의 ESG 리스크 측정 가능
3.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에 대한 기준 공개 필요

I.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¹ 심의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사건 인지 →

조사심사 → 위원회 상정 →

심의 및 시정조치 → 불복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제재제도인 심결제도는 아래 〈표 1〉과 같이 위원 전원(9 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 인을 포함한 위원 3 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로 운영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는 〈그림 1〉² 및 아래 내용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 사건 인지 단계

법 또는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제 49 조에 의거하여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조사가 가능하며, 위반혐의는 직권인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고 접수 시 예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한다.

2) 조사·심사 단계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3) 위원회 상정

조사·심사 단계에서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하고 결재를 받은 후에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한다.

4) 심의 단계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위법여부와 조치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공정거래법」 제 43 조).

또한, 의결 결과 통지 단계는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공정거래법」 제 45 조).

5) 불복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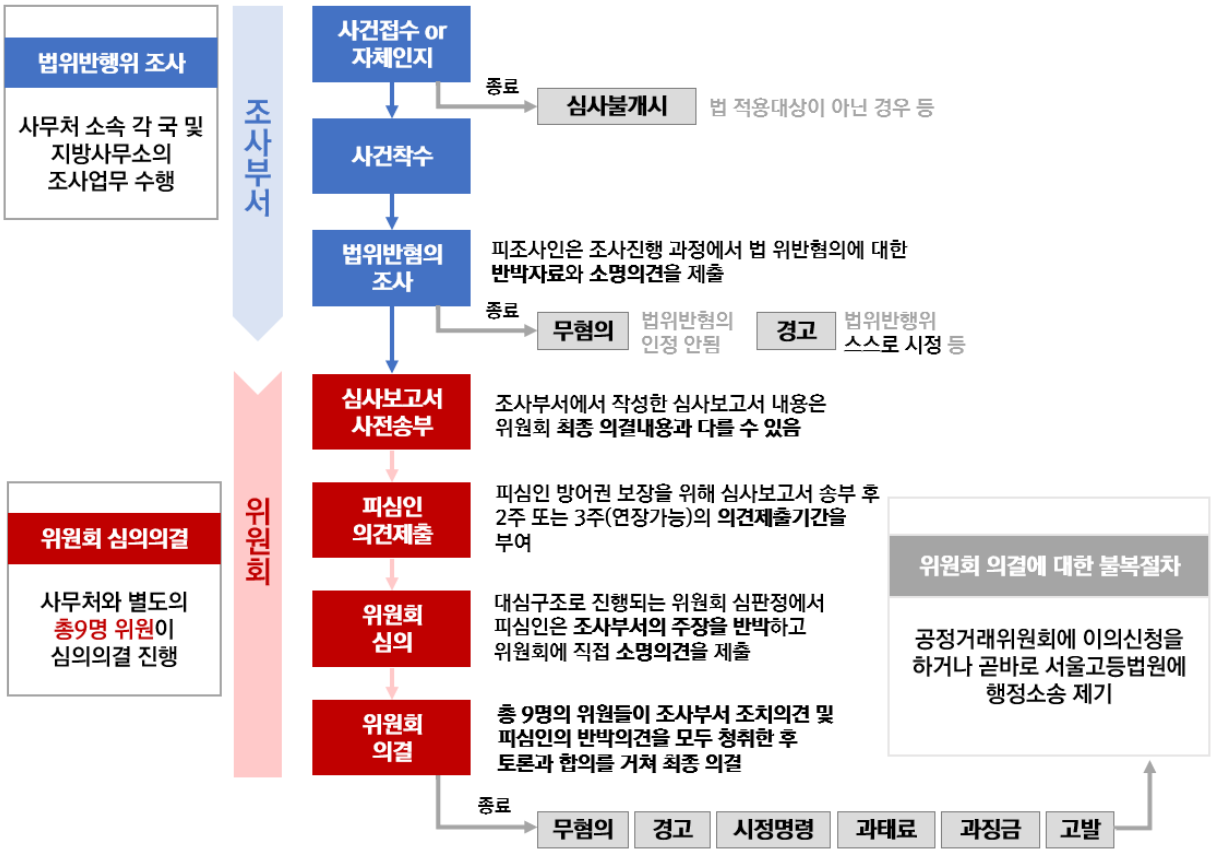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또는 행정소송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60 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 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 53 조).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 53 조의 2).

¹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²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사례(2020.06)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공정거래법」 제 54 조, 제 55 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표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 운영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 37 조의 2, 제 42 조 제 1 항)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 37 조의 1, 제 42 조 제 2 항)
소관사항	- 법규 등의 제·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 (「공정거래법」 제 37 조의 3)	- 일반사건 - 승인·인정·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 유형별 현황³

(1)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법 위반 유형

부당한 공동행위: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

최근 5 년간(2016 년 - 2020 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법 위반 유형과 건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총 891 건에 해당하였다. 2020 년 가장 많이 발생한 법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140 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법 위반 유형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81 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림 3>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³ 본 보고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재 유형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의결서에 공개된 대표 조치유형과 대표 위반유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되는 조치유형과 위반유형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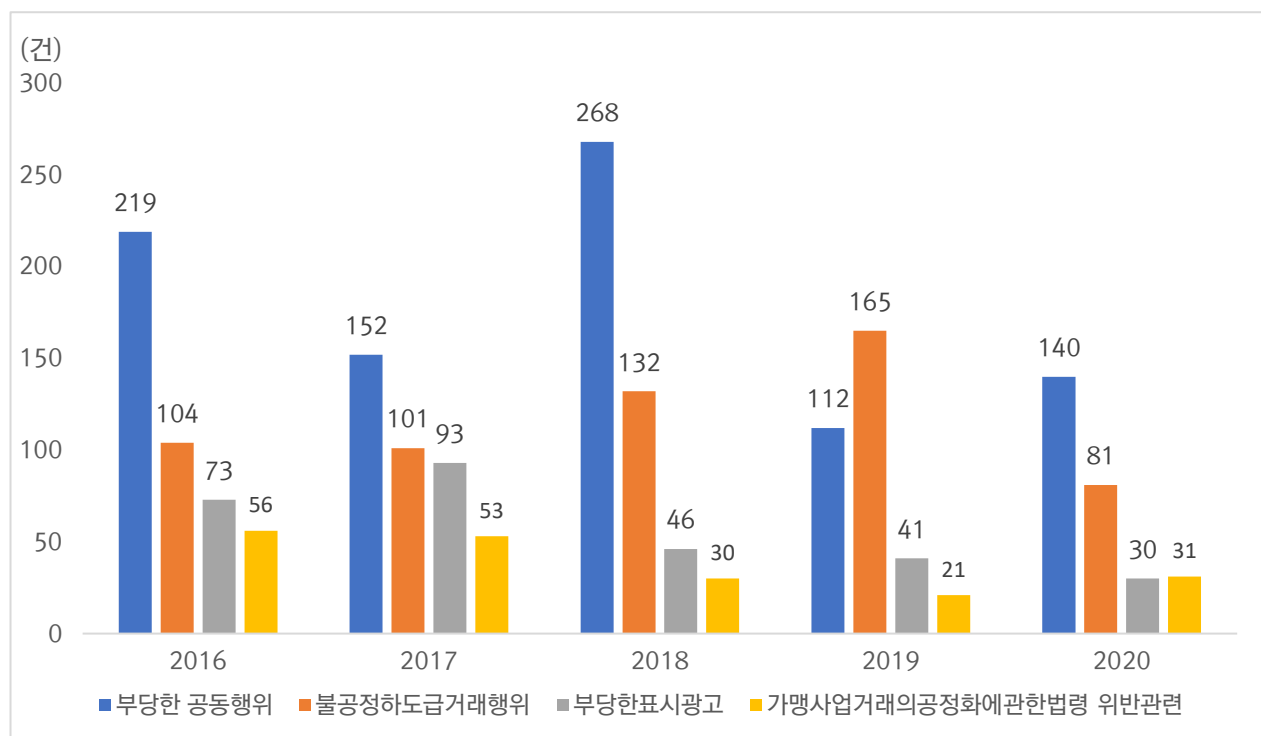
표 2.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법 위반 유형 건수

(단위: 건)

위반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부당한 공동행위	219	152	268	112	140	891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104	101	132	165	81	583
부당한 표시광고 ⁴	73	93	46	41	30	28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령 위반관련	56	53	30	21	31	191
할부거래에관한법령 위반관련	27	36	18	25	10	116
경제력 집중억제	30	20	12	6	37	10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 위반	20	27	8	29	21	105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1	22	26	11	13	9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위반관련	11	26	4	16	17	74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12	14	15	9	11	61
기타 ⁵	20	18	37	38	31	144
합계	593	562	596	473	422	2,64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림 2.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법 위반 유형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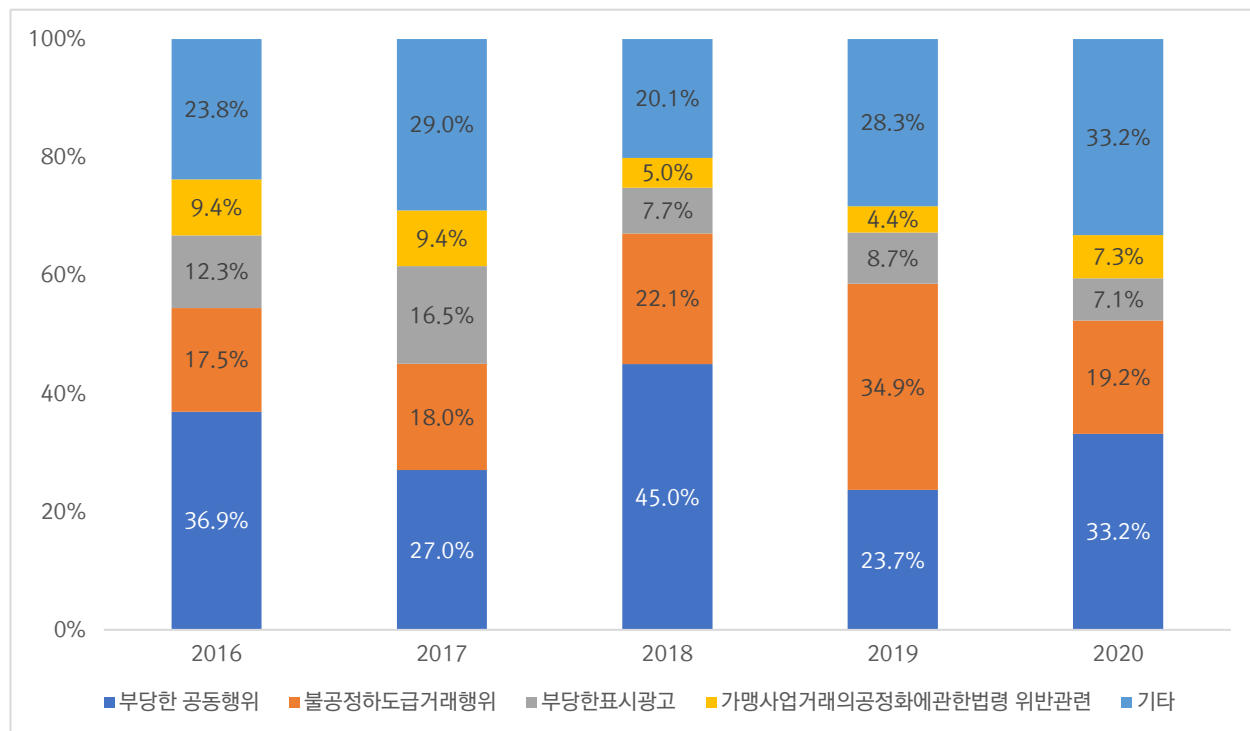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결서를 기준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별도로 구분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분류하였다.

⁵ 기타는 불공정 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약관, 자료 미제출 등, 집행정지 신청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포함한다.

그림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법 위반 유형 비중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유형

시정명령과 고발, 과징금: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치 유형과 건수는 아래 <표 3>와 같으며,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조치 유형은 시정명령으로 총 781건 발생하였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시정명령과 고발, 과징금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조치 유형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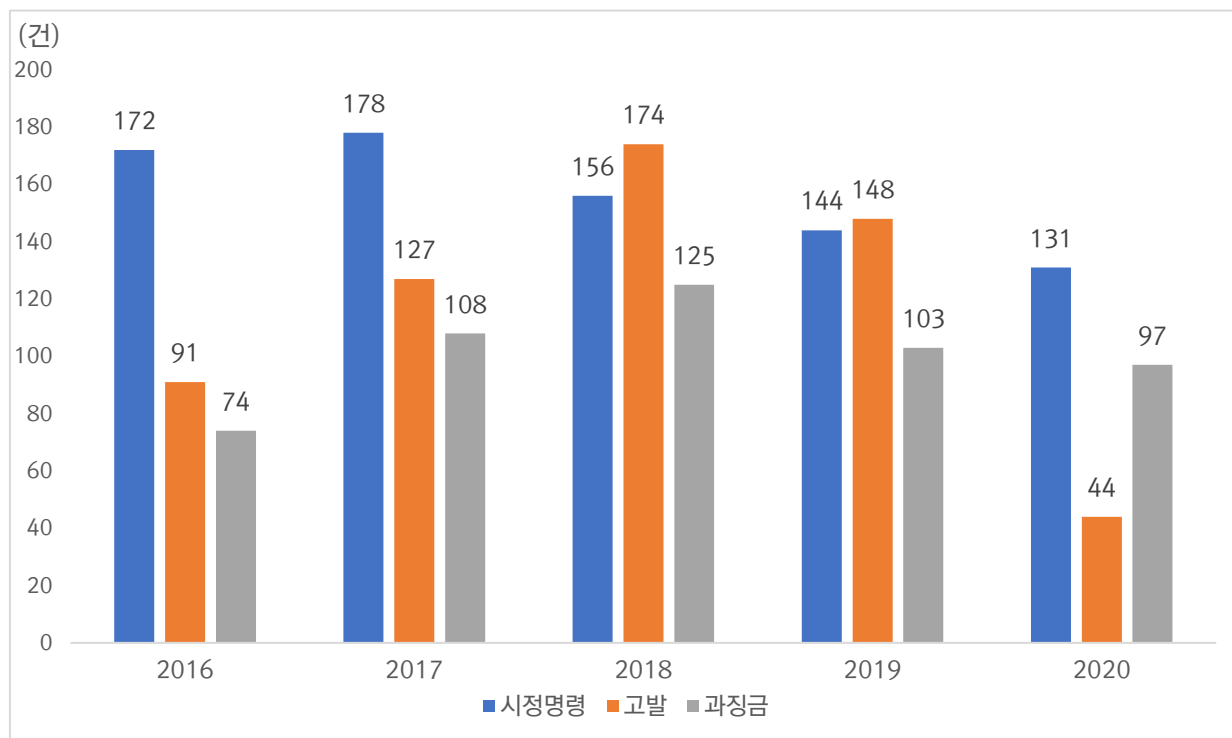
조치 유형 ⁶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시정명령	172	178	156	144	131	781
고발	91	127	174	148	44	584
과징금	74	108	125	103	97	507
기타 ⁷	256	149	141	78	150	774
합계	593	562	596	473	422	2,64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6 부록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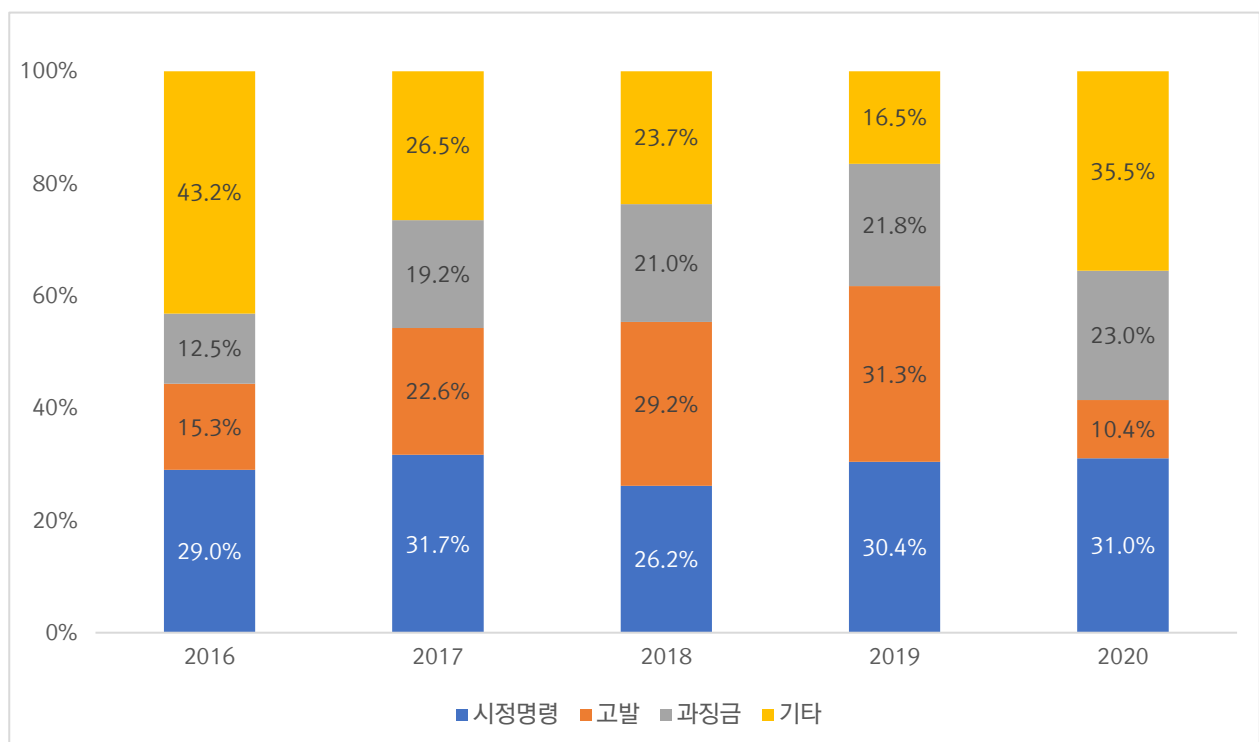
7 기타 조치 유형은 재결기간, 경고, 인용, 원안의결, 일부인용, 무혐의, 기각, 심의절차 종료, 수정의결, 동의의결 인용, 경고인정, 경고 무혐의, 재결각하, 종결처리, 기타 조치, 시정권고, 동의의결 기각, 주의 촉구, 기업결합 예외 인정, 심의절차 중지, 영업정지요청, 임시중지 명령 등을 포함한다.

그림 4.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조치 유형 건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림 5.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조치 유형 비중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산정기준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과징금 산정기준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11.30 일부개정)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아래와 같이 7 가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 ②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 ③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 ④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⑤ 부당한 지원행위
- ⑥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⑦ 보복조치

아래 <표 4>는 이 중 부당한 공동행위와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다.

표 4.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⁹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¹⁰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8.5% 이상 10.0% 이하	17 억원 이상 20 억원 이하
	2.2 이상 2.6 미만	7.0% 이상 8.5% 미만	15 억원 이상 17 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5.0% 이상 7.0% 미만	12 억원 이상 15 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5.0% 미만	8 억원 이상 12 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 이상 3.0% 미만	1 천만원 이상 8 억원 미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8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 년 12 월 9 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도 수준이 상향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 배 상향 조정하여,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지배율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높임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 년 후 시행될 예정임.

9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 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함.

10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최소 1 점, 최대 3 점)는 위반행위 내용(경쟁제한성, 이행정도)과 위반행위정도(관련 시장점유율, 관련매출액, 부당이익, 지역적범위)로 구분되며, 부과수준에 따라 상(3 점), 중(2 점), 하(1 점)로 구분된다(부록 2 참고).

표 5.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주 1)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요약 통계량

2020 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의 요약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2020 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포스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건(744.69 억 원)에 해당한다.

표 6. 2020 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요약 통계량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과징금	4,898	246	1	74,46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대신지배구조연구소

(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사례

1) 6 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스코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¹¹

2020 년 포스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744 억 원 재산정 및 부과
건

→ 2020 년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6 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스코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건’은 2020 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 중 단일기업에 대해 가장 많은 과징금 744 억 원을 부과한 사례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담합 사건의 위반행위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2013 년 1 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부당한 공동행위(2006.02-2008.04)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포스코의 소송과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되었다. 이후 2020 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 및 부과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건의 절차와 내용은 아래 <표 7>와 같다.

¹¹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2020-192 호

표 7. 포스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례

일시	내용																						
2006년 2월	포스코와 4개 사업자(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¹² 는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아연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도금량에 비례하여 제품별로 아연할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테이블을 마련하여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 4월 - 5월	포스코와 4개 사업자는 아연도강판 가격을 35,000 원 또는 40,000 원 인상하였다.																						
2006년 7월 - 8월	포스코와 4개 사업자는 제품별 실제 사용 아연량을 감안한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이를 2008년 4월까지 유지하였다.																						
2006년 11월 - 12월	포스코와 4개 사업자는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아연할증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수요처에 대한 설득 실패로 실제 인상에는 실패하였다.																						
2013년 1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포스코와 4개 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조치를 시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2월 - 2008년 4월 기간 중 ‘가전용 및 일반용 아연도강판 및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자동차용 아연도강판 제품 중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포스코와 4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점을 들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징금 총 893.69 억원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table><tr><th colspan="7"><포스코 과징금 산정기준></th><th>(단위: 백만원)</th></tr><tr><th>관련매출액</th><th>중대성 판단</th><th>부과 기준율</th><th>1차 조정</th><th>2차 조정</th><th>부과과징금 결정</th><th>최종 부과 과징금</th></tr><tr><td>2,364,126</td><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7%</td><td>-</td><td>10% 감경</td><td>40% 감경</td><td>89,363</td></tr></table>	<포스코 과징금 산정기준>							(단위: 백만원)	관련매출액	중대성 판단	부과 기준율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최종 부과 과징금	2,364,126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	-	10% 감경	40% 감경	89,363
<포스코 과징금 산정기준>							(단위: 백만원)																
관련매출액	중대성 판단	부과 기준율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최종 부과 과징금																	
2,364,126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	-	10% 감경	40% 감경	89,363																	
2015년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가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포스코와 4개 사업자들의 행위를 제 1 공동행위(아연할증료 도입 공동행위), 제 2 공동행위(아연할증료 테이블 적용 합의 및 실행 공동행위), 제 3 공동행위(아연할증료 변동 기준 변경합의 후 미실행 공동행위)로 구분하고, 포스코가 제 1 공동행위에는 가담하였으나, 제 2 공동행위와 제 3 공동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포스코가 늦어도 2006년 12월 제 1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처분시효 5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취소하였다.																						
2016년 10월 27일	대법원은 포스코가 제 1 공동행위에만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2006년 12월까지 공동행위를 탈퇴하였거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2019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제 1 공동행위가 2008년 4월까지 유지되었다고 보아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제 1 공동행위에만 가담한 포스코에 대해 7%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고 부과 과징금 결정단계에서 40%를 감액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였다.																						
2019년 7월 8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2월 8일 판결에 대해 최종 확정하였다.																						
2019년 7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징금 893.63 억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12 세아제강 제외

2020년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포스코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의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재산정 의결에서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1차 조정, 2차 조정을 원심결과 동일하게 산정하였다.

한편, 2019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가 제 1 공동행위에만 가담하였을 뿐 제 2 공동행위, 제 3 공동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포스코가 공동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부과과징금의 감경률에 대해 기존 적용된 40%에서 10%p 상향한 50%의 감경률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744.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포스코 과징금 재산정기준>

(단위: 백만원)

관련매출액	중대성 판단	부과 기준율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최종 부과 과징금
2,364,126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	-	10% 감경	50% 감경	74,46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포스코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할 필요

한편, 포스코는 2002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하여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준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8대 핵심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3.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아래 <표 8>의 포스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추진경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이 발생한 시점 전후로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포스코가 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대한 외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시점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일치한 점은 포스코의 자체적인 내부준법시스템이 실효성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목할 만하다. 포스코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도입된 후 20여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포스코 내부준법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준법경영이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표 8. 포스코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추진경과

일시	내용
2002년 8월	POSCO compliance program 도입
2003년 6월	POSCO 윤리규범 선포(공정거래 준수 의지 천명)
2004년 3월	이사회 산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2006년 3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평가 최우수
2006년 12월	CP 운영에 대한 외부평가(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AA" 획득)
2007년 4월	계열사 공정거래담당자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학습동아리 'Fair Trade Academy' 개최
2008년 12월	CP 운영에 대한 외부평가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AA" 획득)
2009년 3월	공정위의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 평가 (A+ 최우수)
2010년 12월	CP 운영에 대한 외부평가 (국내기업 최초 3회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AA" 획득)
2011년 9월	포스코 협력사(45개)에 대한 CP 신규도입 지원
2012년 7월	포스코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 도입
2012년 12월	CP 운영에 대한 외부평가 (국내기업 최초 4회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AA" 획득)
2013년 1월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준수 서약
2013년 6월	동반성장 지수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14년 5월	공정거래 유관부서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2014년 6월	동반성장 지수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15년 6월	동반성장 지수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16년 3월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개최
2016년 6월	동반성장 지수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16년 10월	POSCO Ethics Summit 개최
2017년 3월	포스코 및 주요 그룹사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2017년 4월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개최(PCA)
2018년 1월	그룹 Compliance 추진 조직의 전문성 및 시너지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CP 업무를 법무실로 통합
2018년 3월	포스코 및 주요 그룹사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2018년 9월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개최(PCA)
2019년 3월	포스코 및 주요 그룹사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2019년 9월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개최(PCA)
2019년 12월	AI 활용 약관 공정화 시스템 구축
2020년 1월	포스코, 주요 그룹사 및 해외법인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자료: 포스코 홈페이지

2) 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 중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한 사례

‘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은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 중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한 사례이다. 2020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견 기업집단의 감시를 강화하고 무형자산인 상표권의 양도 및 사용 거래와 관련된 최초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에 대해 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같은 기업집단 소속회사 삼립을 매개로 거래하여 삼립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 ②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가 약 5년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 ③ 삼립이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381.42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④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 조치를 취하였다.¹³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샤니와 SPC 삼립을 포함한 5개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¹⁴

이에 대해 기업집단 「SPC」는 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표 9. 기업집단 「SPC」의 부당지원행위¹⁵

지원 행위	법 위반 기간	지원 주체	지원 내용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2011.04.01 ~ 2019.04.11	샤니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함.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2012.12.28	파리크라상, 샤니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함.
통행세 거래	2013.09.01 ~ 2018.07.01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및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하여 구매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¹³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제 2020-015 호

¹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제 2020-290 호

¹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에스피시(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 지원 행위 제재(2020.07.29)

3) 현대제철 등 11 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현대제철 등 11 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3,000억 8,300 억
원을 부과한 사례

‘11 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¹⁶은 최근 6 년간(2016 년 - 2020 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3,000 억 8,300 만 원을 부과한
사례이다.

2021 년 1 월 26 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강, 동국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현대제철을 포함한 7 개 제강사가 2010 년부터 2018 년까지 약
8 년 동안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들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고, 이 중 현대제철은 가장 많은 과징금 909.58 억
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해당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낼
계획임을 밝혔다.

표 10. 최근 1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례

사건	의결일	조치 유형	위반 유형	과징금 부과 내역	중대성 판단
6 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2020.07.23	과징금	부당한 공동행위	포스코 744 억 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2020.10.23	고발	부당한 지원행위	총계 647 억 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파리크라상 252 억 원	
				에스피엘 76 억 원	
				비알코리아 11 억 원	
				샤니 15 억 원	
				SPC 삼립 291 억 원	
11 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2021.01.18	시정명령 및 고발	부당한 공동행위	총계 3,000 억 8,300 만 원	중대한 위반행위
				대한제강 346 억 원	
				동국제강 499 억 원	
				와이케이스틸 429 억 원	
				한국제강 313 억 원	
				한국철강 496 억 원	
				한국특수형강 6 억 원	
				현대제철 909 억 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¹⁶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제 2021-016 호

II.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제도

1.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처리절차¹⁷

금융감독원은 내부적으로 감사업무와 제재업무를 분리·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감사업무 진행절차는 아래 〈그림 6〉과 같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내부처리절차이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금융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및 의결이 이루어진다.

그림 6.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진행절차



자료: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처리절차 안내(2020.06)

¹⁷ 금융감독원, 감사업무 처리절차 안내(2020.06)

2.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 유형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관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래 <표 11>와 같이 구분된다. 일부 위법·부당행위가 반복 또는 경합되는 경우에는 <표 12>와 같이 제재가 가중된다.

표 11.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유형

구분	중징계		경징계	
기관제재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기관주의	
	영업·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기관경고			
임원제재	해임권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중대한 손실 초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직무정지	해임권고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주의
	문책경고	위법부당행위로 상당한 손실 초래		
직원제재	면직(해임권고)		견책(주의적 경고)	
	정직(직무정지)		주의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표 12.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유형의 가중

구분	내용
기관제재	최근 3년 이내에 2 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 1 단계 가중
	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 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 → 1 단계 가중
임원제재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 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 →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 단계 가중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된 경우 → 1 단계 가중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 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 → 1 단계 가중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 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 1 단계 가중

직원제재 직원이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제재 가중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은 임원제재 기준을 준용
→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는 각각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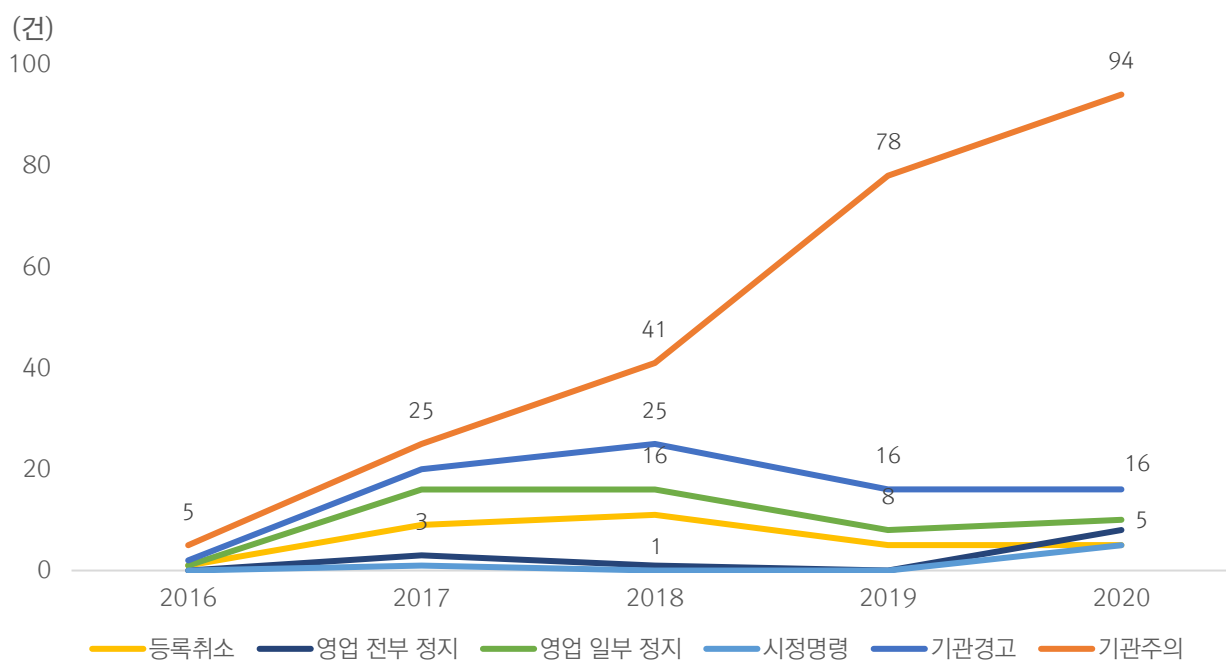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3.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 유형 현황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경징계
수준의 기관주의 제재가 큰
폭으로(2016년 5건 →
2020년 94건) 증가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 유형별 현황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취소, 영업 전부 정지, 영업 일부 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구분되는데, 최근 5년간 경징계 수준의 기관주의 제재가 큰 폭으로(2016년 5건 → 2020년 94건) 증가하였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중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가 증가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7.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 유형별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관련 공시

4.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1)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아래 <표 13>와 같이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는 위반행위 내용(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과 정도(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횟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수준을 정하고 있다(부록 3 참고).

표 13.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과징금 부과기준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 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3 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5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의 동기(상, 중, 하) 및 결과(중대, 보통, 경미)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산정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표 14>와 같이 위반행위의 동기(상, 중, 하) 및 결과(중대, 보통, 경미)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 위반행위 동기

- 상: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중: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하: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반결과

- 중대: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보통: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경미: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표 14.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결과/동기	상	중	하
중대	법정 최고금액의 100%	법정 최고금액의 80%	법정 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 최고금액의 80%	법정 최고금액의 60%	법정 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 최고금액의 60%	법정 최고금액의 40%	법정 최고금액의 2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5.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사례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는 추세

최근 5 년간(2016 년 - 2020 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과 요약 통계량은 아래 <표 15> 및 <표 16>과 같다.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 년간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845 건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105 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최근 5 년간 전체 과태료 금액은 총 970.18 억 원으로 전체 과징금 금액(352.57 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KB 증권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과 관련하여 기관경고와 과징금 57.55 억 원, 과태료 9,750 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와 과태료 197.1 억 원을 부과한 건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8 억 원을 부과한 것이다.

표 15. 최근 5 년간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요약 통계량

(단위: 백만원, 건)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건수	합계
2016 년	43	1.0	283	21	895
2017 년	144	2.0	894	20	2,885
2018 년	637	5.0	5,755	13	8,280
2019 년	642	2.7	4,796	26	16,698
2020 년	260	1.0	1,834	25	6,499
2016 년 - 2020 년	336	1.0	5,755	105	35,257

자료: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관련 공시, 대신지배구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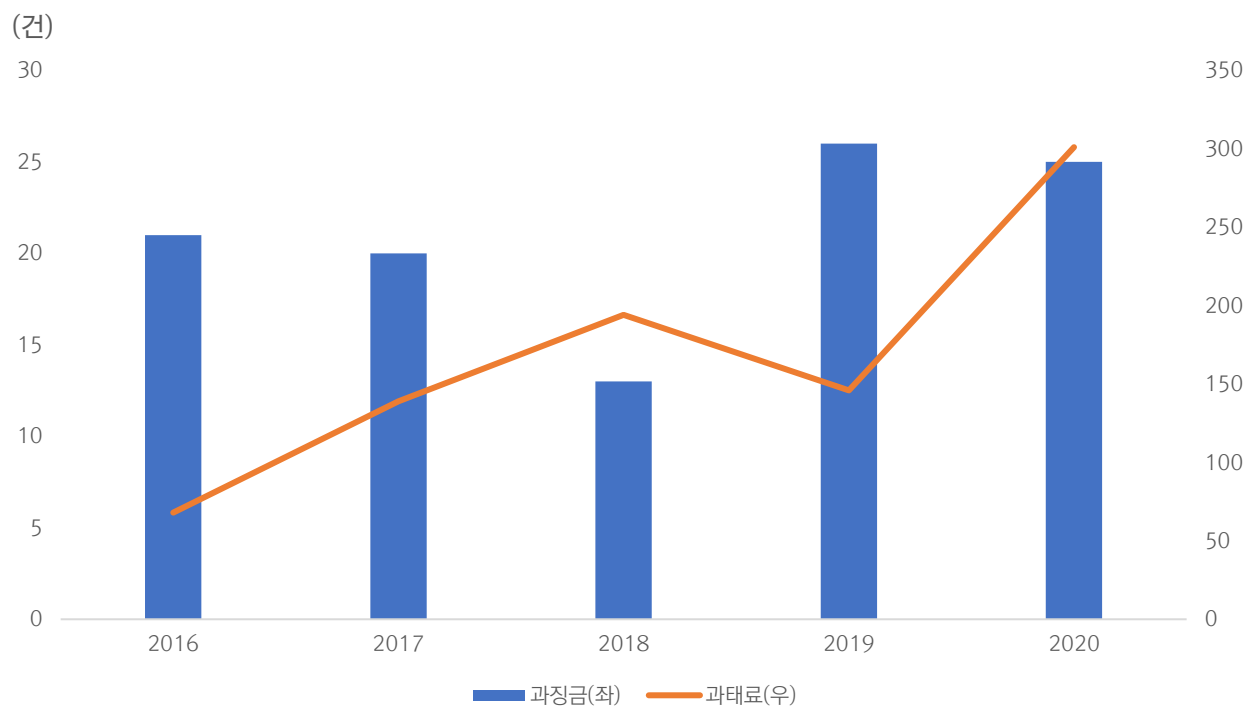
표 16.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요약 통계량

(단위: 백만원, 건)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건수	합계
2016년	41	0.1	473	68	2,755
2017년	51	0.3	1,550	139	7,030
2018년	51	0.2	2,000	193	9,840
2019년	122	0.1	3,160	144	17,516
2020년	199	0.1	19,710	301	59,876
2016년 - 2020년	115	0.1	19,710	845	97,018

자료: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관련 공시, 대신지배구조연구소

그림 8.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관련 공시

III. 결론 및 시사점

1.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의 의미

2020년 포스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744억 원 재산정 및 부과
건

→ 2020년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본 보고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제도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와 관련된 ESG 리스크의 의미와 정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는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제도를 통해 시정명령과 고발,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포스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포스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2013년 과징금 약 894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포스코 측의 이의신청(소송)과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과징금을 환급하였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일부 사유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약 744억 원으로 감경 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 중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포스코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할 필요

앞의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포스코는 2002년 8월부터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한 이후 2006년과 2008년, 2010년, 2012년에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에 대한 외부평가(공정거래위원회)에서 “A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동반성장 지수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포스코의 내부준법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외부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한 시점과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진행된 시점이 일치하는 점은 내부준법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포스코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도입된지 약 20년의 오랜 기간이 지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의 자체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포스코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외형적인 시스템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주의
제재가 큰 폭으로 증가

: 2016년 5건 → 2020년
94건

또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취소, 영업 전부 정지, 영업 일부 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구분되는데,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기관주의 제재가 큰 폭으로(2016년 5건 → 2020년 94건)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경징계 수준의 제재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중 상대적으로 징계수위가 낮은 ‘기관주의’ 제재가 강화된 것은 금융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현상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를 통해 해당 사건의 ESG 리스크 측정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공개된 과징금 산정기준,
금융위원회의 징계 수위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는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는 개별 기업의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법(또는 규정)의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모든 제재가 동일한 ESG 리스크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법(또는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한 ESG 리스크는 제재 부과 기관에서 공개한 제재 수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하여 부과되며, 부당한 지원행위(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치는 위반액과 중대성 정도를 고려하여 부과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세부평가 기준은 〈부록 2〉와 같이 위반행위 내용(경쟁제한성, 이행정도)과 위반행위 정도(관련 시장점유율, 관련매출액, 부당이익/피해규모, 지역적범위)를 참작하여 산정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징계 수위에 따라 제재유형(등록취소, 영업 전부 정지, 영업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 제재부터 징계 수위가 높은 등록취소 제재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ESG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록 3〉과 같이 위반행위 내용(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과 정도(부당이익 규모,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횟수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대성 정도를 산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결과(중대, 보통, 경미)와 위반동기(상, 중, 하)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공개된 과징금 산정기준과 금융위원회의 징계 수위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기업의 ESG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의미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에 대한 기준 공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제재에 대한
일관적인 판단 기준 공개
→ 제재와 관련된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량화에
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으므로 제재 조치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였다. 하지만,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조치 유형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ESG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제재정보 공시는 제재내용 공개안과 의사록,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등을 통해 제재유형(등록취소, 영업 전부 정지, 영업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에 따른 징계 수위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과징금 및 과태료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와 비교하였을 때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내역은 정보 공개 측면에서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으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적용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내용 등 산정기준이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는 제재 수위에 따라 그 의미와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에서 부과한 모든 제재를 동일한 ESG 리스크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제재에 대한 일관적인 판단 기준이 공개된다면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된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량화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조치 유형

조치 유형	내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내리는 시정조치의 하나임.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의 하나로 피심인의 권익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한편 시정명령은 민사상책임이나 형사상책임을 묻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성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유형은 각 위법행위별로 당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인 경우에는 가격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이 있고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채무보증의 취소,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이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당해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이 있음.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함.
고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함.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 3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을 하여야 함. 고발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 71 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한 경우는 시정조치를 불이행하거나 계속적인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위법사실이 매우 중대하여 경쟁제한효과가 지극히 큰 경우 등임.
재결기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을 의미함.
재결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행하는 심리, 의결을 재결이라고 함. 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재결이라고 하고 있음. 재결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고,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며,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인용재결을 함. 「공정거래법」등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60 일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 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보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함.
기각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을 심사한 결과 당해 행위가 동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증거부족으로 당해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무혐의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이의신청을 기각함
경고	법규·규칙 등 일정한 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미한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사실상 주의촉구의 의미가 강함.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를 말함(사건절차규칙 제 50 조).

과태료	과료(過料)라고도 하며 금전벌의 일종으로 형벌인 벌금, 과료(科料)와 구별하여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부과함. 이는 다음 세 가지로 대별됨. ①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②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③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행정상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란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목적에 침해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①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또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②기업결합의 신고, ③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 ④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⑤위반행위의 조사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2 억원 이하사업자: 2 억원 이하, 행위자: 5 천만원이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 69 조의 2).
인용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승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승인, 이의신청에 대한 승인 등을 포함함
원안의결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승인 등을 포함함.
일부인용	이의 신청에 대한 일부 승인 및 기각을 포함함.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사 또는 심의 결과 범위내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내리는 조치를 말함(사건절차규칙 제 47 조)
심의절차종료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심의절차 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함.
수정의결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승인 등을 포함함.
동의를결인용	동의를결 시정방안의 이행 등을 포함함.
경고인정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기각 등을 포함함.
경고무혐의	경고 처분 취소 등을 포함함.
각하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내용을 심사한 결과 당해 신고내용이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 53 조(이의신청)제 1 항 등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함.
종결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내리는 조치의 하나로,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사망, 해산, 파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채권에 관한 사건으로서 피심인이 동 법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내려짐.
기타의 조치	시정명령 변경처분 및 과징금 일부 직권 취소에 대한 건,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등을 포함함.
시정권고	자진시정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함.
동의를결절각	동의를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기각 등을 포함함.

주의촉구	피심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한 주의 촉구 등을 포함함.
기업결합 예외인정	주식취득 예외인정의 건 등을 포함함.
심의절차중지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기각 등을 포함함.
영업정지요청	피심인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등을 포함함.
임시중지명령	피심인에 대한 영업 임시중지 명령 등을 포함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부록 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상(3 점)	중(2 점)	하(1 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경쟁제한성	0.2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1,2,3,4,8 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5,6,7,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상(3 점) 또는 중(2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행정도	0.2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 감시·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감시 및 제제한 경우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되나 실제 감시 및 제재하지는 않은 경우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시장점유율	0.1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위반 행위 정도	관련매출액	0.2	·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5 천억원 이상인 경우 · 제 8 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1,000 억원 이상, 물품구매 및 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경우	·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3 천억원 이상 5 천억원 미만인 경우 · 제 8 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 금액이 400 억원 이상 1,000 억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4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3 천억원 미만인 경우 · 제 8 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400 억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40 억원 미만인 경우
		0.2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 및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 및	상(3 점) 또는 중(2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 /피해규모	0.2			

지역적범위(제 8 호의 경우 입찰 특성)	0.1	소비자 등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 효과가 1 개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경우 · 제 8 호의 경우 발주처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2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 제 8 호의 경우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주)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0.2)는 부당이익/피해규모의 비중치에 0.1 을 합산(0.3)하고 관련 시장점유율의 비중치에 0.1 을 합산(0.2)하여 점수를 산정함.

부록 3.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과징금 부과기준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비중	상(3 점)	중(2 점)	하(1 점)
참작사항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 점) 또는 중(2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 점) 또는 중(2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익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 점) 또는 중(2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 점) 또는 중(2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 점) 또는 중(2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 점) 또는 중(2 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Compliance Notice

〈ESG Issue Report〉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주주의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본 보고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강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실행한 주주총회의 결의 결과에 대하여 당 연구소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어느 주주총회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당 연구소의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